

이화사학연구소 규정

1963. 12. 1. 제정

2016. 6. 16. 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학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소속) 연구소는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에 둔다. <개정 2012.12.31., 2016.6.16.>

제3조(사업) 연구소는 역사학분야의 연구활동을 조성하고 우리나라 역사학 발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역사학 연구자료 정리 및 연구지 발간, 도서의 출판
2.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
3. 역사학 공동연구 및 연구 지원
4. 국내의 역사학연구 제 학회와의 연구협력
5. 동문과의 역사학 연구 협력사업
6.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

제4조(소장·부소장)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, 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.

② 소장과 부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인문과학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2.12.31., 2016.6.16.>

③ 소장은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,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조직) ① 연구소에 한국사학부, 동양사학부, 서양사학부, 출판부 및 행정실을 둔다.

- ② 한국사학부는 한국사의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- ③ 동양사학부는 동양사의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- ④ 서양사학부는 서양사의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- ⑤ 출판부는 연구지 또는 도서의 출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- ⑥ 행정실은 서무 회계 및 기타 타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.

제6조(부장) ① 행정실을 제외한 각 부에 부장을 둘 수 있다. 부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인문과학대학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2.12.31., 2016.6.16.>

② 각 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.

제7조(연구위원) ① 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특별계약교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인문과학대학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2.12.31., 2016.6.16.>

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의

제청으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인문과학대학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12.12.31., 2016.6.16.>

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 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.

제8조(연구원 등) ① 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.

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,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.

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.

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.

제9조(직원) ① 연구소에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② 직원은 인문과학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임면하되, 직원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. <개정 2012.12.31., 2016.6.16.>

제10조(운영위원회)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이화사학연구소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인문과학대학장, 소장, 부소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인문과학대학장이 임명하는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인문과학대학장이 된다. <개정 2012.12.31., 2016.6.16.>

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2.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
5.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(사업계획 및 보고)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문과학대학장,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다음 사업년도 개시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12.31., 2016.6.16.>

1. 당해 연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
2. 차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
3. 운영위원 명단

제12조(경비 및 현금출납) ① 연구소의 경비는 연구소 기금, 찬조금, 보조금 및 기타 연구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② 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재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. <개정 2016.6.16.>

부칙 <1963. 12. 1. 제정>

- ① 본 소 규정은 196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본 소의 규약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
부칙 <1966. 11. 26. 개정>

- ① 본 규정은 1966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본 소 규정의 미비한 점은 간사회의 결정에 따른다.
- ③ 본 규정은 1966년 11월 26일 제2회 정기총회에서 수정된 개정안 임.

부칙 <1973. 3. 1. 개정>

이 규정은 197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81. 8. 17. 개정>

이 규정은 198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82. 3. 17. 개정>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8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규정)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이화여자대학교 문리대학 이화사학연구소 규정은 폐지한다.

부칙 <2003. 4. 2. 전문개정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2. 12. 31. 개정>

이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6. 6. 16. 개정>

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